

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자치단체 차원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를 포괄적인 자원봉사활동지원 내용을 포함한 자치법규로 활용하기 위해 보완 또는 보충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. (안제3조)
- 나. 자원봉사센터지원과 예산 및 결산 근거규정을 마련함.
(안제8조내지제9조)
- 다. 자원봉사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. (안제10조)
- 라. 자원봉사대축제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범 시민적 참여속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. (안제13조)
- 마.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불의의 재난,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규정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함. (안제14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자치단체 차원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복지과주를 위해서 필수적인 봉사단체임.
-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자치단체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자원봉사단체장에서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와 보호·보상등을 실시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